변 경 대 비 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결산	변동성	종류 신설	클래스 명칭변경	고유재 산 투자	법령 개정
1	미래에셋글로벌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(재간접형)	0	-	C-P2e	-	-	-
2	미래에셋법인전용MMF1호(국공채)	-	0	-	-	-	-
3	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2호(주식)	0	0	-	-	-	-
4	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20증권자투자신탁1호 (채권혼합-재간접형)	0	-	C-P2e	-	-	-
5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-2호(주식)	-	0	C-e, CG	-	-	-
6	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0	0	-	-	-	-
7	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-재 간접형)	-	0	-	-	-	-
8	미래에셋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-	0	-	-	-	-
9	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)	0	0	-	-	-	-
10	미래에셋밸런스전략배분0.2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 재간접형)	0	-	-	-	-	-
11	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 혼합)	-	1	C-P2e	0	-	0
12	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1	C-P2e	-	-	-
13	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(H)(주식-재간접형)	-	-	-	-	0	-
14	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(USD)(주식-재간접 형)	-	-	-	-	0	-

2. 변경 사항:

- 1)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
- 2) 변동성 값 업데이트
- 3) 종류 신설
- 4) 클래스 명칭 변경
- 5)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추가
- 6)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
- 3. 효력발생일: 2017년 11월 10일(금)

4. 변경 내용:

2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(%)	변경 후(%)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
미래에셋법인전용MMF1호(국공채)	0.06	0.03	6	6
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2호(주식)	11.75	11.93	3	3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-2호(주식)	12.11	12.33	3	3
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(주 식혼합)	-	12.63	3	3
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 (주식-재간접형)	13.16	13.4	3	3
미래에셋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-	0.85	4	5
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 권)	0.35	0.36	6	6

3) 종류 신설

펀드명	보수(%)	판매수수료(%)	환매수수료
미래에셋글로벌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(재간접형)	0.36	-	-
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20증권자투자신	0.2	-	-
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		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-2호(주식)	C-e: 0.62	_	90일 미만
미대에첫한다펜한프중천구시한국(*2호(구국)	CG: 0.87	_	: 이익금의 70%
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	0.4		
(주식혼합)	0.4	-	-
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	0.37		
권혼합)	0.57	-	-

[참조1] 가입자격

구분	가입자격		
종류C-e	온라인 투자자		
⊼ac na∘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		
종류C-P2e	라인 가입자		
	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		
종류CG	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		
	자		

4) 클래스 명칭 변경

<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<클래스 명칭>	<u>종류 C</u>	<u>종류 C-P</u>
<클래스 명칭>	<u>종류 C-e</u>	<u>종류 C-Pe</u>

6)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

<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5부. 1. 가.	<신설>	5)의2.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
집합투자자		의 변경(법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
총회 등 /		<u>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</u>
(3) 집합투자		<u>경우만 해당한다)</u>
자총회 결의		
사항		
제5부. 3. 가.	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	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
정기보고서	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	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・관리
/ (2)자산운	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	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
용보고서	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	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
	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	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
	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	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
	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	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
	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	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
	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	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
	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투자자에게	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투자자가 해
	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	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
	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	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
	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	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
	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	<u>제2항제1호의</u>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
	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	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
		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
		합니다.
제5부. 3. 나.	<신설>	5)의2.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

수시공시 /		의 변경(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
(1)신탁계약		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
변경에 관한		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)
공시		
제5부. 3. 나.	5)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령 등의	5)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령 등의
수시공시 /	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	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
(2)수시공시	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	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
	한 투자설명서 변경, <u>단순한 자구수정</u>	한 투자설명서 변경, <u>단순한 자구수정</u>
	<u>등</u>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	<u>등,</u>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<u>,</u>
	외	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
		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
		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는 제외
제5부. 3. 나.	☞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	☞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
수시공시 /	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.	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.
(3)집합투자	-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	-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
재산의 의결	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<u>주주</u>	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<u>매년</u>
권 행사에	총회일부터 5일이내에 증권시장을 통	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
관한 공시	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등을 공시할 것	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
		<u>증권시장을 통하여</u> 공시할 것

<집합투자규약>

구분	정정 전	정정 후
제43조(신탁	① ~ ③ (생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계약의 변	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	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
경)	일(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	일(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
	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	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
	날을 말한다)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	날을 말한다)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
	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	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
	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판매	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판매
	회사는 제41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	회사는 제41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
	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제	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제
	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	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
	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	등 경미한 사항 변경 및 투자운용인력
	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	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
	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	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
	니하다.	<u>경하거나</u>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
		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
		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9조(금전	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차입 등의	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	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
제한)	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	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
	액은 차입 당시 <u>투자신탁재산 총액</u> 의	액은 차입 당시 <u>투자신탁 순자산총액</u>
	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	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
	다.	된다.
제50조(공시	① ~ ⑥ (생략)	① ~ ⑥ (현행과 같음)
및 보고서	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	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
등)	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・관리보고	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・관리보고
	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	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
	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	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
	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	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
	<u>다만,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</u>	<u>다만,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</u>
	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	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
	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	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
	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	<u>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</u>
	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	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
	라야 한다.	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
		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
		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, 자산보관
		<u>·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</u>
		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
		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
		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
		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
		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

미래에셋자산운용㈜